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16.)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1.16.
경제복지여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 6. 이종화 의원 등 3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1. 6.

다. 상 정 및 의결일자 :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16.)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이 종 화 의원)

○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랑을 정함(안 제6조)

마.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현정)

▣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창원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목적은 상위법령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나.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제1항에서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제1항에 따른 난임 관련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 ※ 최초시행 : '19. 10.

- 사업비: 1,205백만원(도비 603, 시군비 602)
- 지원대상: 경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대상
-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도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지원

적용대상 (여성기준)			44세이하	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7회	50만원	40만원

적용대상 (여성기준)		44세이하	45세이상
인공수정	5회	30만원	20만원

- 2019년부터 도비 및 시비 예산 투입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예산 이외의 추가 소요예산 없음.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에서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난임부부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향후 규칙에 위임할 예정임.

라.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인「모자보건법」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에서도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 또는 공표하여선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는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타당함.

▣ 검토의견으로는

○ 본 조례안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으로 본 조례 제정은 **긍정적**으로 사료됨.

<전국과 창원시의 합계출산율 비교, 2019-2021>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9	2020	2021
전 국	0.92	0.84	0.81
창 원 시	**1.01**	**0.90**	**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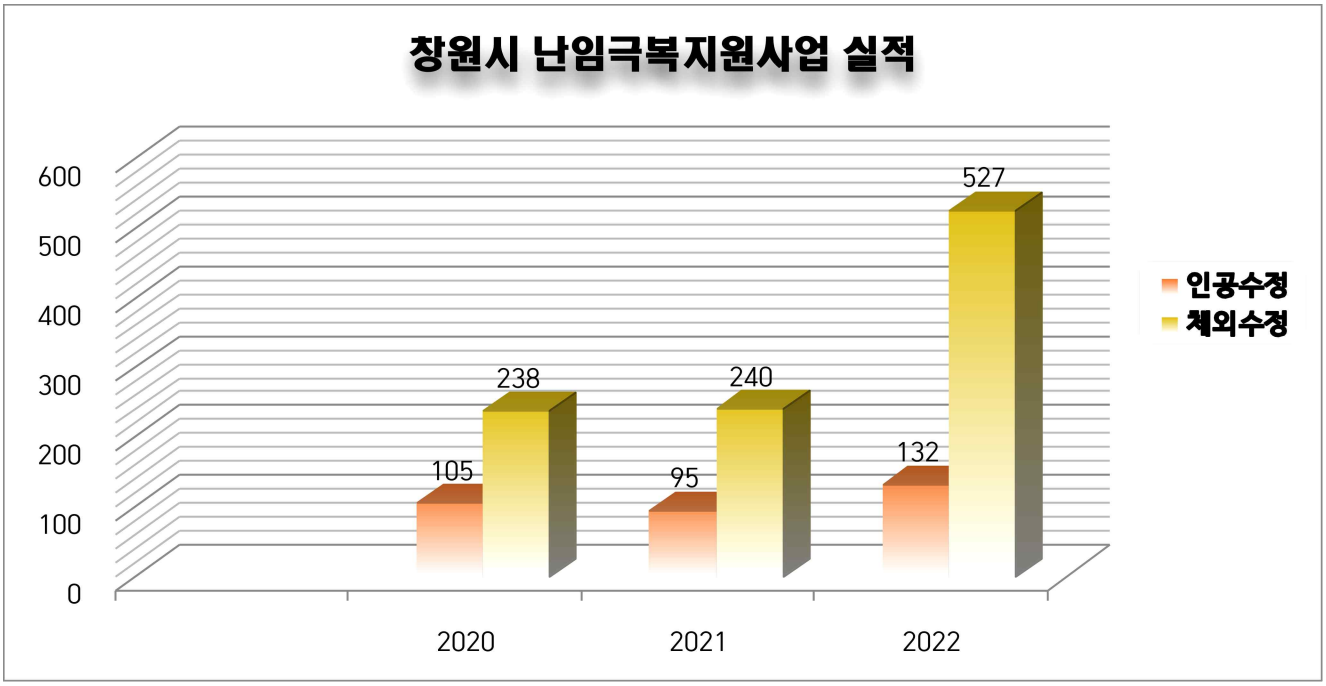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시도/시/군/구)」

○ 또한, 창원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의 합계출산율보다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으나, 2021년에는 **0.89명**으로 **초저출산 상태**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창원시 난임극복지원사업 실적 현황>

(단위: 명)

년도	시술 신청자		성공률		비고
	인공수정	체외수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2020	105	238	41명(39%)	52명(22%)	
2021	95	240	6명(6%)	75명(31%)	
2022	132	527	13명(9%)	151명(28%)	



○ 이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 기재생략

7. 토론(대체토론)요지(주요문제점)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사항, 촉구사항 등) : 없음